
과 업 지 시 서

「제품 및 칩셋 기술 영상 제작 용역」

2021년 12월

I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제품 및 칩셋 기술 영상 제작 용역

나. 과업범위

- XR 디바이스 제품 및 칩셋 기술 영상 제작
 -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XR 디바이스 및 칩셋 기술 교육용 영상 제작
 - XR 디바이스 전문 인력양성 교보재 활용을 위한 드라이브 IC, 구동보드 등 칩셋 기술 영상제작
 - 국내 XR 디바이스와 칩셋 제품에 대한 기술영상 및 맞춤형 영상 제작

II

일반사항

가. 목적

- 본 지시서는 XR 디바이스 플랫폼 신규 구축에 있어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하 “수요자”)이 계약자인 제품 및 칩셋 기술 영상 제작 기업(“공급자”)에게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X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련 전문가 인력양성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용 영상제작을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상세 제작을 통해 국내 XR 디바이스 제품과 칩셋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기술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통한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 센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비롯한, 성과확산용 자료 등에 활용함에 있다.
- 영상 제작은 최적화된 영상 출력과 맞춤형 영상 제작이 되어야 하며, XR 디바이스 제품과 내부 칩셋의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기술영상으로 활용. XR 디바이스 관련 기업 및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영상이 제작 되어야 한다.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다. 소요예산

- 20,000,000원 금 이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라. 납품장소

- X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202호

마. 제작 시 유의점

구 분	제작 내용 및 설명
제품 및 칩셋 기술영상 제작 용역	○ 전문인력 교육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XR 디바이스의 구조 및 각 부품별 역할을 잘 표현하는 방향으로 제작하여, 교육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영상 제작 수행 ○ 국산 XR 디바이스 및 드라이브 IC 등을 기반으로 디자인 및 영상 작업 수행 ○ 작업한 디자인 모델에 위치 회전, 외부 광량, 외부광원 색온도 등의 주변 환경 변화에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최대한 XR 디바이스 및 칩셋의 실물 색조, 질감 등이 표현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영상 제작

III

과업의 일반지침

가. 설계의 해석

디바이스 및 칩셋의 영상 제작은 도면과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에 의하여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하되 불분명한 개소가 있을 시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협의한다.

나. 제작

영상 제작 결과물은 USB, CD 등의 이동식 저장장소에 저장하여, 추후 영상 제작 작업이 가능하도록 원본 파일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재료 및 색조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재료, 색조대로 제작하여야 하며, 완성 후 업무담당자에게 납품, 제작 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설계 변경

본 디바이스 제작과 관련, 필요에 따라 영상의 치수, 위치, 공법 등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증감하지 않으며, 내역에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거나 없더라도 당연히 제작되어야 할 부분은 용역금액의 증감 없이 제작해야 한다.

마. 견본품

제작 전 모든 칼라, 도안, 문안 원고 등은 사전에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바. 수속

- 1) 본 디바이스 제작 납품에 필요한 수속은 감독자의 책임 하에 완료하도록 한다.
- 2) 납품 시 필요한 수속 절차 및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비밀 유지

본 용역과 관련된 데이터의 소유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계약 상대방은 관련 데이터를 허락을 득하지 않은 상태로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며, 과업 진행시 알게 되는 사항에 대하여 비밀 유지 위반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이익은 부담하여야 한다.

아. 안전상의 문제

업무 수행 중이나 행사 중 시설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자. 문제 및 하자의 발생

-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 2)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3) 본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훼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차. 과업변경 조건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